

보도시점 2026. 8. 4.(화) 배포 즉시

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8.4(화) 국민일보, “정년연장 연내 입법… 자진퇴사 청년에 1회 실업급여”

-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.
- 노동부는 자발적 이직 청년의 경우 이직 전 임금의 60%,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.

2. 설명 내용

□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, 향후 노사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	책임자	과 장	이영기 (044-202-7368)
		담당자	서기관	조경선 (044-202-7374)